

3. 노르웨이(Norway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: 1936년
- 현행법: 1997년(국민보험); 2005년(의무직업연금); 2009년(연금개혁, 2011년 시행)

2. 제도형태

- 보편제도, 사회보험제도, 명목확정기여방식(NDC), 의무직업연금
 - ※2011년부터 보편제도와 소득비례연금이 각각 최소수당보장제도와 NDC 연금으로 대체됨. 1963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신규 제도가 적용되며, 1954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구제도가 적용됨. 1954~1962년 사이 출생자에게는 두 제도의 절충안이 적용됨.

3. 적용대상

- 보편제도: 영해 밖의 노르웨이 선박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노르웨이 또는 노르웨이의 대륙붕 위의 영구 또는 이동 시설에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모든 자
- 사회보험제도 및 NDC: 근로자와 자영자
 - 특별제도: 선원, 어부, 철도 근로자 및 공무원 근로자
- 강제직역연금: 민간 부문 근로자
 - 자영자는 임의적용
 - 특별제도: 공공 부문 근로자

4. 자원조달

- 가입자
 - 보편제도, 사회보험제도, NDC : 현물급여를 포함하여 총 적용소득의 8.2%; 연금 등 적용개인소득의 5.1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연소득은 54,650 kroner로 간주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 연소득은 없음
 - 최대납부액은 54,650 kroner를 초과하는 연간 총소득(현물급여 포함)의 25%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/양육/산재/실업 급여의 재원이 됨
 - 강제직역연금: 없음, 단, 확정급여제도에 한해 소득의 최대 4% 부과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연 소득은 연 기본액으로 적용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연 소득은 연 기본액의 12배로 적용
- 연 기본액은 96,883 kroner

○ 자영자

- 보편제도, 사회보험제도, NDC : 현물급여를 포함하여 총 적용소득의 11.4%, 연금 등 개인소득의 5.1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연소득은 54,650 kroner로 간주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 연소득은 없음
 - 최대납부액은 54,650 kroner를 초과하는 연간 총소득(현물급여 포함)의 25%
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질병/양육 급여의 재원이 됨
- 강제직역연금: 없음, 확정급여제도에 한해 소득의 최대 4% 부과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연 소득은 연 기본액으로 적용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연 소득은 연 기본액의 12배로 적용
 - 연 기본액은 96,883 kroner

○ 사용자

- 보편제도, 사회보험제도, NDC : 임금지급총액의 14.1%
 - 일부 지리적 지역에서 보험료 면제/할인 (일부 분야의 기업과 62세 이상의 근로자 제외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 연소득은 없음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/양육/산재/실업 급여의 재원이 됨
- 강제직역연금
 - 확정기여제도에서는 임금지급총액의 최소 2%
 -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완전 지원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연 소득은 연 기본액으로 적용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연 소득은 연 기본액의 12배로 적용
 - 연 기본액은 96,883 kroner

○ 정부

- 보편제도, 사회보험제도, NDC : 결손액 보충
 - 정부의 보험료는 실업급여의 재원이 됨
- 강제직역연금: 없음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 (구제도) : 연금은 기본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

- 기본연금
 - 67세로 16세~66세에 최소 40년 납부
 - 부분연금: 67세로 16~66세에 3~39년 납부
 - 조기연금: 67세의 완전기본연금(혼인 여부 상관 없이 독신 1인 지급율) 이상의 총 연금소득(기본연금, 소득비례연금, 다른 보충금)을

제공할 만큼 충분한 가입기간이 62세에 확보된 경우; 양자 협정이 적용되는 외국 적용기간이 있는 경우 최저연금액 수준은 비례적용

- 독신에 대한 기본연금은 연간 기본액의 100%(96,883 kroner)
- 퇴직요건은 없음(고용 유지 가능)

• 소득비례연금

- 67세 이며 연금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
- 연금점수는 가입자의 연 소득(실업수당이나 여타 사회보장급여 포함)이 연간 기본액보다 높을 경우 얻을 수 있음
- 연간 기본액의 12배를 초과하는 소득은 제외
- 타인을 무보수로 부양하는 경우에도 연금 점수를 얻을 수 있음
- 연간 기본액은 96,883 kroner
- 부분연금: 67세이며 연금점수가 3점 이상 40점 미만인 경우
- 조기연금: 67세의 완전기본연금(혼인 여부 상관 없이 독신 1인 지급율) 이상의 총 연금소득(기본연금, 소득비례연금, 다른 보충금)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가입기간이 62세에 확보된 경우; 양자 협정이 적용되는 외국 적용기간이 있는 경우 최저연금액 수준은 비례적용
- 퇴직요건은 없음(고용 유지 가능)
- 연금 보충금(소득조사): 제한된 근무 이력을 가진 자, 저소득자, 혹은 소득 비례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만 받는 자
- 피부양자 보충금 (소득조사): 자신 명의로 들어오는 노령/장애연금이 없으며 완전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피부양 배우자 (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거인); 18세 미만의 각 피부양 자녀; 연금수급자는 67세 이상이어야 함
- 소득조사: 가구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가구 소득이 있으면, 피부양자 보충금이 회수됨

○ 노령연금 (신제도) : 연금은 보장연금과 소득연금으로 구성됨

• 보장연금(보편제도, 소득조사)

- 67세로 16세~66세에 최소 40년 가입기간
- 소득조사: 가입자가 소득연금을 수령할 경우 보장연금이 회수됨
- 부분연금: 67세로 16~66세에 3~39년 납부
- 조기연금: 67세의 40년 가입기간 보장연금(혼인 여부 상관 없이 독신 1인 지급율) 이상의 총 연금소득(보장연금, 소득연금)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가입기간 내지 명목적립금이 62세에 확보된 경우; 양자 협정이 적용되는 외국 적용 기간이 있는 경우 최저연금액 수준은 비례 적용

- 40년 가입기간 독신자 기준 연간 보장연금은 175,739 kroner
- 퇴직요건은 없음(고용 유지 가능)
- 소득연금(NDC)
 - 퇴직연령은 67~75세로 유동적임
 - 무보수로 타인을 부양, 군복무(사회복무 포함), 실업급여 기간은 보험료 납부를 인정받을 수 있음
 - 조기연금: 67세의 40년 가입기간 보장연금(혼인 여부 상관 없이 독신 1인 지급율) 이상의 총 연금소득(보장연금, 소득연금)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가입기간 내지 명목적립금이 62세에 확보된 경우; 양자 협정이 적용되는 외국 적용 기간이 있는 경우 최저연금액 수준은 비례 적용
 - 40년 가입기간 독신자 기준 연간 보장연금은 175,739 kroner
 - 퇴직요건은 없음(고용 유지 가능)
 - 노령연금(보장연금, 소득연금) 해외지급 가능

○ 노령연금 (강제직역연금)

- 67세부터 수령 (조종사, 간호사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조기 수령 가능)
- 확정급여제도는 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~40년의 보험료 납부기간 필요 (제도에 따라 상이함)
- 조기연금: 62세
- 연기연금: 75세까지 연기 가능

○ 장애연금 (보편, 소득조사)

- 16세~67세에 소득능력을 100% 상실했으며 16~66세동안 4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 (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상 퇴직연령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이 인정됨)
- 소득조사: 가입자의 연소득 또는 특정 간병/부모 급여로부터의 소득이 연간 기본액의 40%를 초과할 경우 장애연금이 회수될 수 있음 (부분 장애 혹은 여타 요건에 의해 제한선은 달라질 수 있음)
- 연간 기본액은 96,883 kroner
- 부분장애: 소득능력을 50%(노동평가수당을 받는 경우 40%)이상 100%미만 상실했을 경우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
- 부분연금: 16~66세에 3년 이상 4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 (장애 발생시점부터 정상 퇴직연령까지의 기간 중 인정된 기간을 포함)
- 소득능력 상실은 국가보험청(National Insurance Administration)이 판정
- 자녀보충금(소득조사): 18세 이하의 피부양 자녀에 지급

- 기본보충금: 만성질환, 부상, 혹은 기형에 의한 지속적인 추가 지출이 있을 경우 지급
- 상시간호수당: 특별한 보조 혹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
- 특정 조건 하에 국외지급 가능

○ 노동평가수당

- 18~67세이고, 50% 이상의 소득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, 신청일 직전까지 최소 3년(특정 경우 1년)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
- 가입자는 치료/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상태이고, 고용이 가능한 상태이며, 노르웨이 노동복지청의 보조 하에 구직활동 중에 있어야 함
- 자녀보충금: 18세 이하의 피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지급

○ 유족배우자연금(소득조사) : 연금은 기본연금과 소득비례연금, 특별 보충금으로 구성

- 기본연금(보편)
 - 사망자가 16~66세 사이에 최소 40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 (사망일부터 정상퇴직연령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가입 인정)
 -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가입 요건 비적용
 - 부분연금 : 16~66세 사이에 3년 이상 4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 (사망일부터 정상퇴직연령까지의 기간 중 인정된 기간을 포함)
- 소득비례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40년 이상의 연금점수를 보유했을 경우
 -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가입 요건 비적용
 - 사망자의 연 소득(실업수당과 각종 사회보장급여 포함)이 연간 기본액을 초과하면 연금점수 획득
 - 연 소득은 연간 기본액의 12배까지만 인정
 - 타인을 무보수로 부양했을 경우에도 점수 인정 가능
 - 연간 기본액은 96,883 kroner
 - 부분연금: 3년 이상 40년 미만의 연금점수를 보유한 경우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
- 특별보충금
 - 사망자가 소득비례연금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득비례연금 대상자였을 경우
 - 수급권자: 사망자와 5년 이상 결혼한 유족배우자, 사망자와 5년 이상 동거했으며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, 사망자와의 자녀가 있는 유족배우자, 특정 조건 하의 을 만족하는 이혼/별거인
 -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혼인/동거 기간 조건 비적용

- 모든 유족은 정상 퇴직연령 미만이어야 함
- 소득조사
 - 유족의 연 고용소득이 연간 기본액의 50%를 초과하면 배우자 연금의 모든 부분이 회수됨
 - 일반적으로 55세 미만의 유족은 계속해서 근로하며 연간 기본액의 두 배 이상의 연 소득 취득 가능
- 유족이 재혼하거나, 다른 동거인과 자녀를 갖거나, 자신의 명의로 다른 연금 (특정 단체협약연금 포함)을 수급하게 되거나, 정년을 맞이할 경우 배우자연금 지급이 중지됨
- 육아급여(소득조사) : 유족 부모가 학생 신분이거나 해외에서 근무하여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지급
- 유족 혹은 사망자가 해외에서 2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배우자연금의 해외 지급이 가능
- 과도기급여(소득조사)
 - 유족이 학생이거나(사망일 2년 내로 학생이 된 경우도 포함), (사망자와의)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,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배우자 연금 대상자가 아닐 경우 지급
 - 유족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12개월(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)동안 과도기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됨
 - 소득조사는 배우자연금과 동일
- 고아연금
 - 사망자가 16~66세 사이에 3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졌을 경우
 - 18세 미만의 유족에게 지급(완전고아인 학생의 경우 20까지, 부모가 산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21세까지)
- 장례수당 (자산조사) : 장례식 비용 지원, 사망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자산 조사 없음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(구제도) : 기본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
 - 기본연금
 - 연 기본액의 100%: 연금을 받거나 연 기본액 2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90%
 - 연 기본액은 96,883 kroner
 - 부분연금: 40년 미만 가입자는 부족분에 비례하여 감액
 - 조기연금: 기본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
 - 소득비례연금
 - 연금점수가 가장 높은 20년 내의 가입자 평균 연금점수와 기본액을 곱한

금액의 42%.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연금 점수의 평균이 사용됨

- 연도별 연금점수: 가입자의 급여산정 대상 소득과 해당 연도 기본액과의 차액을 기본액으로 나눈 수
- 급여산정대상 소득상한액: 기본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본액의 6배에서 12배 사이인 소득의 33%를 가산한 금액; 연소득이 기본금액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 무시
- 연금점수 상한은 연간 7점이며 75세까지 획득 가능
- 총 연금액 (기초연금 + 소득비례연금)은 기대수명지수에 따라 조정
- 기대수명지수: 가입자 연령대의 기대수명과 가입자의 연금 청구 연령에 따라 계산된 지수
- 연금수급자는 정년 후 매년마다 총 연금(기초연금 + 소득비례연금)의 0%, 20%, 40%, 50%, 60%, 80%, 혹은 100%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음
- 부분연금: 비례하여 감액
- 조기연금: 소득비례연금과 동일하게 산정
- 연금 보충금: 가입자의 노령연금 소득(기초연금 + 소득비례연금)과 최저 연금액의 차액을 지급
- 최저 연금액은 매년 노르웨이 의회에서 조정
- 피부양자 보충금(소득조사): 배우자가 있다면 연 최저 연금액의 25%, 각 자녀 당 연 최저 연금액의 20%
- 연 최저 연금액은 181,744 kroner
- 소득조사: 피부양자 보충금은 가입자 가구의 연 총소득과 가정 형편에 따른 면제분의 차액의 50%만큼 감액됨
- 가입자가 40년 이하의 가입기간을 가졌을 경우 피부양자 보충금과 면제분은 비례적으로 감액됨
- 지급 주기: 매월 지급
- 급여조정: 평균임금상승률에서 0.75%를 뺀 지수에 따라 조정

○ 노령연금 (신제도) : 보장연금과 소득연금으로 구성

- 보장연금 : 연 최대 180,744 kroner 지급
 - 연금을 받거나 연 기본액의 2배 이상의 소득을 가진 배우자가 있을 경우 167,196 kroner
 - 소득조사: 수급하는 소득연금의 80%까지 감액
 - 부분연금: 가입기간 40년에서 부족한 만큼 비례적 감액
 - 조기연금: 보장연금과 동일하게 계산
- 소득연금

- 13~75세의 소득의 18.1%에서 임금상승률과 기대수명에 따라 조정
- 적용되는 최대 소득은 연 기본액의 7.1배
- 연 기본액은 96,883 kroner
- 총 연금액(보장연금 + 소득연금)은 기대수명지수에 따라 조정
- 기대수명지수: 가입자 연령대의 기대수명과 가입자의 연금 청구 연령에 따라 계산된 지수
- 가입자는 정년 후 매년마다 총 연금(기초연금 + 소득비례연금)의 0%, 20%, 40%, 50%, 60%, 80%, 혹은 100%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음
- 조기연금: 소득연금과 동일하게 산정
- 지급 주기: 매월 지급
- 급여조정: 평균임금상승률에서 0.75%를 뺀 지수에 따라 조정

○ 노령연금 (강제직역연금)

- 확정기여형
 - 가입자는 평생 혹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연금을 구입해야 함
 - 일시금 금지
 - 조기/연기연금: 계리적으로 감액/증액하여 지급
- 확정급여형
 - 소득대체율은 기금에 따라 다름 (2012년 기준 대부분 58~70% 수준)
 - 부분연금: 납부기간에 따라 완전 연금의 비례로 지급
 - 조기/연기연금: 계리적으로 감액/증액하여 지급
- 급여조정: 국가 연금제도 지수를 따르기로 하는 적용 약정이 없다면, 투자 수익에 기초하여 급여 조정

○ 영구장애연금

- 장애연금 : 소득능력을 완전(100%) 상실하였고 16~66세동안 40년 이상 거주 하였다면, 장애 발생 직전의 5년 중 가입자의 최고 소득 3년 평균 적용소득의 66%를 지급
 - 장애발생시점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 인정
 - 최저 장애연금액은 부부 기본액의 2.28배(26세 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2.66배); 독신자의 경우 2.48배(26세 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2.91배)
 - 연 기본액은 96,883 kroner
 - 급여 산정을 위한 연간 최대 소득은 연 기본액의 6배
 - 부분장애: 판정된 소득능력 상실에 기초하여 완전장애연금의 비율로 지급
 - 부분연금: 40년 미만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감액
 - 자녀보충금: 각 자녀 당 연 기본액의 40% 지급(가구 총소득에 비례하여

감액하고 자녀의 소득(자본소득 포함)이 연 기본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

- 장애급여와 자녀보충금 합계의 상한 금액은 장애 발생 전 가입자 평균 적용 소득의 95%임
- 기본보충금: 장애로 인해 생기는 특정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월 678 ~ 3,383 kroner 지급
- 상시간호수당: 매월 1,130, 1,215, 2,430, 4,860 또는 7,290 kroner 지급; 상위 3단계는 18세 미만자에게만 지급
- 지급 주기: 매월 지급
- 급여조정: 물가와 소득수준의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

○ 노동평가수당

- 장애발생 직전 연도 가입자 연금적용소득의 66%와 장애발생 직전 3년간 가입자 평균 연금적용소득의 66% 중 더 큰 금액
 - 최대 3년간 주 5일 지급(특정 조건 하에 2년 연장 가능)
 - 최저액은 연 기본액의 2배(16세 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.44배)
 - 급여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최대 연 소득은 연 기본액의 6배
 - 연 기본액은 96,883 kroner
 - 자녀보충금 : 각 자녀에 대해 주당 5일을 일일 27 kroner 지급
 - 16~67세 가입자에게는 직업훈련 관련 비용에 대해 완전 / 부분 보상으로 보충수당 지급
 - 지급 주기: 매월 지급

○ 유족배우자연금(소득조사) : 기본연금과 소득비례연금, 특별보충금으로 구성

- 기본연금: 유족인 배우자에게 기본액의 100%까지 지급
 - 유족배우자가 지난 18개월간 새로운 배우자와 12개월 이상 동거했을 경우 90% 지급
 - 산재로 인해 사망한 자의 배우자의 경우 특별 규정 적용
 - 연 기본액은 96,883 kroner
 - 부분연금: 가입기간 40년에 미달하는 만큼 비례하여 감액
- 소득비례연금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수급권이 있던 소득비례 노령/장애연금의 55% 지급
 - 사망자가 67세까지 근로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
- 특별수당 : 사망자가 소득비례연금 수급권이 없었던 경우 연 기본액의 100% 지급
 -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40년에 미달하면 비례하여 감액
- 유족배우자연금에는 최저 한도 없음
- 소득조사: 유족인 배우자의 소득이 기본액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, 완전연금

(기본연금+소득비례연금)과 연간 기본액의 50%를 초과하는 유족 배우자의 연간 고용소득의 40%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

- 양육급여(소득조사) : 유족의 연간 소득, 자녀 양육비용 및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
- 지급 주기 : 매월 지급
- 급여는 매년 5월1일에 물가와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조정
- 과도기 유족급여(소득조사)
 - 12개월간 배우자에게 지급(혼인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간 지급)
 - 사망자의 자녀(18세 미만)를 돌보고 있거나 학생인 경우 연장 지급
- 고아연금(보편)
 - 18세 미만의 첫 번째 자녀에는 연간 기본액의 40%를 지급하고, 18세 미만의 둘째 자녀부터는 각각 기본액의 25%지급
 - 완전고아의 경우, 부모 중 누가 수급권이 있는 더 높은 금액에 기초한 완전 유족배우자연금(기본연금+소득비례연금)
 - 완전고아로 둘째 자녀에게는 기본액의 40%를 지급하고 이하 추가 자녀에게는 각각 25% 지급
 -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액은 균등배분
 -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자녀는 특별규정 적용
 - 연 기본액은 96,883 kroner
 - 지급 주기: 매월 지급
 - 급여는 매년 5월1일에 물가와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조정
- 장례수당
 - 일시금으로 최대 23,337 kroner 지급

7. 관리운영기관

- 보건·보호부(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, <http://www.regjeringen.no/nb/dep/hod/id421/>),
자녀평등부(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, <http://www.regjeringen.no/nb/dep/bld/id298/>),
노동사회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, <http://www.regjeringen.no/nb/dep/asd/id165/>)
 - 전반적 감독
- 노르웨이 노동복지청(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, NAV)
 - <http://www.nav.no/>
 - 전국적 제도 관리운영
 - 지역사무소가 각 지역별로 제도 운영
- 지역세무서가 보험료 징수

- 노르웨이 금융감독국(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of Norway)
 - <https://www.finanstillsynet.no/>
 - 강제직역연금제도 감독
 - 등록된 직역연금기금이 각자의 강제직역연금제도를 관리함

<2018년 ISSA 자료>